

瑞山市새마을子女獎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 
**審 查 報 告 書**

## 1. 審 查 經 過

- 가. 提出日字 : 1999. 7. 23
- 나. 提出者 : 瑞 山 市 長
- 다. 回附日字 : 1999. 7. 23
- 라. 上程日字 : 1999. 7. 29

## 2. 提 案 說 明 要 旨 (提 案 說 明 : 自 治 行 政 課 長 方 景 泰)

### 가. 提 案 理 由

- 現 行 「 瑞 山 市 新 村 學 生 獎 學 金 支 給 條 例 」 (이 하 “ 條 例 ”라 한다)의 규정에 의거 지역 새마을지도자(“새마을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 포함)의 자녀 및 유자녀에게 지급하고 있는
  - 새마을 장학금의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및 장학생 의무규정중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임.

### 나. 主 要 骨 子

- 條 例 제1조의 “자녀 및 유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·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가 곤란한자”를 “자녀 및 유자녀”로 지급대상 범위를 정함.

- 조례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정지 규정중 다음조항을 삭제함.  
2호.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때  
5호. 장학금을 학비목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
- 조례 제10조의 “장학생의 의무”규정 삭제

### 3.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

- 무보수로 헌신 봉사하는 지역 새마을지도자(새마을 부녀회장, 문고지도자 포함)의 사기진작과 사명감을 고취시키기 위해
  - 지난 '95.3.8일자로 동조례를 제정하여 자녀 및 유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왔음.
- 그동안 동조례에 이거 새마을 장학금을 운용하여 오면서 지급대상기준 및 지급정지기준중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규정에 대하여 조례제정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
  -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동등한 위치에서 수혜대상자를 정하고
  - 장학생 의무규정은 학생의 신분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할 사항이므로 동조례에서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사료됨.

### 4.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: 생략

### 5. 討論 및 少數意見 : 없었음

### 6. 審査結果 : 원안대로 가결

의안번호	제 13 호
의결년월일	1999. . . (제 회)

## 서산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서 산 시 장
제출년월일	1999. 7.23 .

# 서산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A3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9. 7. 23
제 출 자 : 서 산 시 장

## □ 개정이유

-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및 장학생의 의무 등 불합리한 사항을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 계획에 의거 합리적으로 개정함으로써
- 무보수로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과 사명감을 고취시키기 위함임.

## □ 주요골자

- 제1조의 “자녀 및 유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·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자”를 “자녀 및 유자녀”로 변경하여 지도자의 경제사정 여하를 불문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를 진작시킴(안 제1조)
- 제9조제1항제2호 “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때” 및 제5호 “장학금을 학비 목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때”를 삭제하여 장학금 지급 목적에 맞도록 함.
- 제10조 “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새마을운동에 이바지하여야 한다”는 장학생의 선발을 위한 학교장 추천서 작성시 판단되는 사항이므로 삭제함.

## □ 참고사항

- 서산시규제개혁위원회 (기감 05090-870('99. 6. 15))
- 입법예고 : '99. 7. 8.

## 서산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산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“자녀 및 유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·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자”를 “자녀 및 유자녀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0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역 새마을지도자 (“새마을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” 이하 같다)의 <u>자녀 및 유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·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 장학금(이하 “장학금·이라 한다)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제2조~제8조 (생략)</p> <p>제9조(지급의 정지)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때.</u></p> <p>3.~4. (생략)</p> <p>5. <u>장학금을 학비 목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</u>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10조(장학생의 의무)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새마을운동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----- ----- -----<u>자녀 및 유자녀</u>----- ----- -----</p> <p>제2조~제8조 (생략)</p> <p>제9조(지급의 정지) ①----- ----- -----</p> <p>1. (생략) (삭제)</p> <p>3.~4. (현행과 같음) (삭제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(삭제)</p>